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업무보고 근거 마련〉

■ 모경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87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모경종 · 정진욱 · 복기왕 · 김준혁 · 이훈기 · 강준현
김승원 · 박지원 · 백승아 · 김 윤 · 박해철 · 윤건영
이준석 · 박정현 · 김원이 · 김용민 · 정청래 · 오세희
의원(18인)

2. 제 안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 의안번호 : 108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 ·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참고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요구 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행정기관의 장 등의 출석 및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의 출석·답변 의무를 명시¹⁾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9조의2(업무보고의 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행정기관의 장 등의 출석 및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석 및 업무보고에 관하여는 제1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현행 「국회법」 제121조²⁾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

1) 개정안에 따라 준용되는 「국회법」 제1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답변 의무 및 대리출석·답변 등에 관한 내용임.

2)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여 질문을 하거나 안전의 심의 등을 행하기 위한 것임.

또한, 「국회법」 제128조³⁾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를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29조⁴⁾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한편, ①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② 정부 등의 보고 요구 ③ 증인 등의 출석 요구와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은 출석이나 보고 등을 요구하는 목적이나 이유를 특정하지 않고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관 부처·기관 등의 업무보고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3)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4) 「국회법」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표-2] 출석·보고 관련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구 분	국무위원 등 출석 요구(현행)	정부 등 보고 요구(현행)	증인 등 출석 요구(현행)	국무위원 등 업무 보고 요구(개정안)
요구주체	본회의, 위원회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
요구요건	의결	의결	의결	의결
요구목적	-	안전 심의, 국정감사·조사	안전 심의, 국정감사·조사	-
요구대상	국무총리·국무위원 ·정부위원	정부, 행정기관 등	증인·감정인 ·참고인	국무위원·정부위원, 행정기관의 장 등
요구 내용·의무	출석·답변 (보고 가능)	보고 (답변 가능)	출석·증언·감정 ·진술	출석·업무보고· 답변
불출석 제재	-	벌칙 있음	벌칙 있음 (증인·감정인)	-

현재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한 「국회법」 제121조나 정부 등의 보고 요구에 관한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업무보고 등 안전 심의⁵⁾를 위하여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고,⁶⁾ 필요한 경우 「국회법」 제129조를 근거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음.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에서 관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관 부처·기관 등의 업무보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업무보고에 대한

5) 안전이란 국회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하는 개념임(국회사무처, 「쉽게 풀어쓴 의회용어」, 2018, p.311). 업무보고는 안전의 하나에 해당함.

6) 본회의의 경우 「국회법」 제121조를 근거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음. 위원회의 경우 ① 「국회법」 제121조를 근거로 2018. 2. 28.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한 사례, ②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2018. 11. 15.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현안 보고요구를 의결하여 현안보고를 받은 사례 등이 존재함(국회사무처, 「국회선례집」, 2024, p.258·299).

법적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은 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원회 의결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으므로 업무보고만을 특정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